

[] 신규검사
특정설비 [] 재검사 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

※사업자등록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이용됩니다.

신 청 인	상 호	
	대 표 자 성명	생년월일
	사무소 소재지	전화번호
	전자우편주소(e-mail)	
	사업자등록번호	

신청내용	수입검토서 발급번호			
	설계단계검사 합격증번호			
	특정설비 종류	규격	수량·용량	단위
	[] 저장탱크	[] 가로형 [] 입형 [] 구형 [] 평저형	[] 상온 [] 저온 [] 초저온	L
	[] 소형저장탱크			L
	[] 차량에 고정된 탱크			L
	[] 압력용기	[] 탭류 [] 드럼류 [] 열교환기 [] 상온 [] 반응기 [] 기타 [] 저온 [] 초저온		L
	[] 기화장치			Nm ³ /h
	[] 독성가스배관용밸브			A
	[] 긴급차단장치			A
	[] 안전밸브			A
	[] 자동차용 가스주입기			
	[] 역화방지장치			A
	[] 냉동용 특정설비	[] 압축기 [] 응축기 [] 증발기 [] 압력용기류		톤 또는 L
	[]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			L
	[] 자동차용 압축천연 가스 완속충전설비			Nm ³ /h
	[] 액화석유가스용 용기잔류가스 회수장치			L
	[] 그 밖의 설비			
	검사 희망일			

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특정설비 [] 신규검사 [] 재검사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신청인

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
검사기관의 장 귀하
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 34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 부장관이 정하는 금액
------	----	--

처리절차	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	
신 청 인	처 리 기 관
	한국가스안전공사(검사기관)
신 청	접 수 현지검사 각인 또는 표시